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3가단2308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인수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재

담당변호사 최정인

피고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후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인찬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김진석

변론 종결 2024. 11. 13.

판결 선고 2024. 12. 11.

주 문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로부터,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3. 30.

접수 제178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인수하고, 피고 C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29. 접수 제933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인수하라.

이 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갑 3호증과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들이 장은성 등 사기조직과 통정하였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임을 알면서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등기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명의수탁자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피고들이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사기조직에 속아 피고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사기조직의 사기범행을 알고 있었으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이 원고가 사기조직에 속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변론에 나타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자신들의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병률

별지